# 고 성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585호 2023. 7. 10.(월)

규 칙

고성군 규칙 제1259호 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• 2

훈 령

고성군 훈령 제478호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...... 11

#### 입 법 예 고

#### 고 시

회					
람					

발행: 고성군, 편집: 인구청년추진단(670-2642, 행정 2642)

고성군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#### 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

2023년 7월 10일

고성군 규칙 제1259호

#### 고성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17조제4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칙은 고성군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(이하 "소속공무원"이라 한다)과 그 직무 수행 전반에 적용한다.
- 제3조(적극행정 책임관) 「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, 적극행정 책임관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.
- 제4조(적극행정위원회) ① 조례 제4조제6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  - 1.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결정
  - 2. 지원 시기, 지원 범위 및 방법 결정
  - 3.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
  -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제5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) ① 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한다)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. 다만, 군수는 「고성군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

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-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·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.
- 1. 고소·고발 등의 경우: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 내
- 2.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: 「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」 (대법원 규칙)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
- ③ 제2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·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, 제2호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,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,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-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령(군의 조례나 규칙을 포함한다)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.
- 제6조(변호인·소송대리인 선임)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.
  -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.
  - 1.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
  - 2. 고성군 법률 고문
  - 3. 정부법무공단(다만,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한다)
- 제7조(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)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 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.
- 제8조(지원 신청)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
  - 2.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
  - 3.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, 출석통지서, 소장 사본, 소송계속 증

- 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
- 4.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
- 5.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
- 6.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
- 제9조(지원 절차 안내 등)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,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·고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) ① 적극행정 책임관이 제9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1조(위원회 상정·심의)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, 지원 범위 등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·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의결할 수 있다.
- 제12조(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)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자료의 제출)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
  - 2.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

할 수 있는 자료

- 3.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
- 4.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·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(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)
- 5.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
-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.
- 제14조(보고)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 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 정할 수 있다.
  -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지원의 취소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
  - 2.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,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(다만,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)
  - 3.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
  - 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 · 의결하는 경우
- 제16조(변호인 보수의 반환) 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  -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  - 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받은 지원 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  - ④ 군수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

공보 제585호	고 성 군 공 보	2023년 7월 10일(월)
결정을 할 수 있다.		
	부 칙	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	ł.	

[별지 제1호서식]

	;	 징계절치		 소명에 관	·한 지원	신청서
신	담 당 자	성명		생년월일		성별
청	임영사	소속			직급	
인	담당업무					
시	청 내 용	□ 변호약	<u>]</u> 보수 지원	(요청 금액	:	)
	0 11 0	□ 변호인	l 선임 지원			
				징계의	결 요구	
	계의결		요구일		관	할 징계위원회
요	구 개 요					
징	계 의 결					
요	구 사 유					
			]결 요구서 /	,		
] =	7비서류		l 선임계약서	, _ , ,	금계산서	
		, .	성임을 소명	하는 자료		
		그 밖			-2 . 1 - 1 . 2	-1.26.1.21.2.2.2.2.2.2.2.2.2.2.2.2.2.2.2.
			. ,		,	청내용이 허위에 의한
						진 경우, 지원 목적에
						반 준수사항을 정당한
'						기타 불이익 처분을
감 	수함을 확	약하며 위의	와 같이 징계	절차에서의	소명에 관한	· 지원을 신청합니다.
			년	월	일	
				신청	인 :	(인)
	!성군수 <sup>-</sup>	귀하				

[별지 제2호서식]

			소송 등	·의 지원	신청서	
신	담 당 지	성명		생년월일		성별
청	남당시	소속			직급	
인	담당업무	-				
신	청 내 용	□ 변호인	민 또는 소송	·대리인 보수 ·대리인의 선  원에 의견	선임 지원	금액: )
			고소·고발·			책임과 관련된 소송
사	건 번 호	접수일	. 관할 5	및 사건번호	접수일	관할 및 사건번호
사	건 개 요					
7	□ 수사개시통보, 출석통지서, 소장사본, 소송계속 증명 등 입증.  □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신 □ 적극행정임을 소명하는 자료 □ 그 밖의 서류					
	신청인 (	)()()은 상	기 내용이	모두 사실임	을 확인하며	여, 신청내용이 허위에
의	한 것이기	거나 지원을	받은 이후	라도 요건이	미비한 점	이 밝혀진 경우, 지원
목	·적에 위변	<u></u>	금 등을 사	용한 경우 또	드는 이 지침	]에서 정한 제반 준수
'		- ,			, – , –	의 취소.환수 및 기타 한 지원을 신청합니다.
			년	월	일	
				신청	]인 :	(인)
1	<u> 성군수</u>	귀하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#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관리대장

연번		신청자		신청일	관할 징계	징계의결	지원	지원	징계	지원 취소	비고
[신킨	소속	성명	성별	~건~8 큰	위원회	요구 사유	결정일	내용	결과	.반환 등	P1-14

[별지 제4호서식]

# 소송 등의 지원 관리대장

연번	্ব	신청자		신청일	사건관할 및	사건개요	지원	지원	수사 및	지원	비고
	소속	성명	성별	2.05	사건번호	/   / <u>U</u> /   <u>J</u>	결정일	내용	및 소송 결과	취소 .반환 등	71,32

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.

고 성 군 수 이 상 근 인

2023년 7월 10일

고성군 훈령 제478호

#### 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

고성군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 1] 개정<개정 2023. 7. 10.>

# 등급별 공간정보의 분류기준(제13조 관련)

등급		분 류 기 준
	기준	•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
	. 16	• 법령에 의해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
		<항공사진> 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
비		<위성영상> •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경지역내시설 포함) 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
공	사례	<수치지도>   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 시설 및 군사시설(휴전선 접 경지역내 시설 포함)이 포함된 지도    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도시스템, 도로명주소 기본도
개		<해저영상물>
		<기타공간정보> 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 -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정수장이 표시된 상하수도시스템, 도로명주소 기본도 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
		·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
	기준	·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
		· 공개될 경우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
공개		<항공사진> 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, 3차원 입체자료   2차원좌표(緯.經度)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   3차원좌표(緯.經.高度)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 자료
제 한	사례	<위성영상> <ul> <li>정밀보정된 2차원 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 자료</li> <li>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1.5m 초과 자료</li> <li>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 자료</li> <li>단,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중 노출되지 않아야 할 대상은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 방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함.</li> </ul>
		<수치지도>     군사 지도     전력 · 통신 · 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

등급		분 류 기 준
구ㅇ	기준	· 비공개 및 공개제한 이외의 공간정보
개	사례	<위성영상> • 좌표를 포함하여 온라인으로 배포할 경우 정밀보정하지 않은 2차원 좌표만 가능

고성군 공고 제2023-1170호

#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10. 고 성 군 수

1. 조례명: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- 가. 법령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,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경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,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- 나.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및 감사 지적사항 정비 등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 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

#### 3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제 · 개정, 폐지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- 나. 행정안전부, 법제처 기획정비 개선 과제 등 반영
- 다. 감사 지적 사항,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 반영
- 라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

#### 4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
 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: (055)670-2083, FAX: (055)670-2059

####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(전화: 055-670-208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고성군 조례 제 호

#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"국장·담당관·과장, 직속기관의 장(농업기술센터 과장 포함), 사업소장"을 "부서장, 직속기관 내 부서장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"개최 2일"을 "개최일 7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개최 전 날"을 "개최일 3일 전"으로 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4호 중 "제9조제1항"을 "제10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3조(「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산업건설국장, 문화환경국장"을 "문화관광과장. 경제기업과장"으로 한다.

② 위원장 ·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4조(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군수"를 "고성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"로 한다.

제5조(「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"부과담당·세입담당·과표관리담당"을 "세정담당·부과담당·세입징수담 당"으로 한다.

제6조(「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」의 개정)

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"「고성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고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」"으로 한다.

제7조(「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 제목 "(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"를 "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"자동이체 방식에 의한"을 "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"을 "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"로 한다.

제8조(「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4항 중 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
제9조(「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10조(「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동외로 156번길 36"을 "송학고분로 195"으로 한다.

제11조(「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보건소장"을 "건강증진과장"으로 한다.

제12조(「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

제24조 중 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
제13조(「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"담당주사로 한다"를 "담당이 된다"로 한다.

제14조(「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고성군 민원봉사과장, 재무과장, 건축개발과장, 도시 교통과장"을 "열린민원과장, 재무과장"으로 한다.

제6조제5호 중 "법 제72조제1항의"를 "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

72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"담당주사와"를 "담당과"로 한다.

제15조(「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
제16조(「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"담당주사가"를 "담당이"로 한다.

제17조(「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·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 ·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 중 ",「고성군 재무회계 규칙」"을 ",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
제18조(「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중 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
제19조(「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"를 "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주부민방위기동대"를 "여성민방위기동대"로 한다.

제2조 중 "주부민방위기동대"를 "여성민방위기동대"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"주부민방위기동대"를 "여성민방위기동대"로 한다.

제2장의 제목 중 "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"를 "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"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20세 이상의 주부"를 "20세 이상의 여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"주부"를 각각 "여성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만 70세"를 "70세"로 한다.

제5장의 제목 중 "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"를 "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"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"주부민방위기동대"를 "여성민방위기동대"로 한다.

별표 1, 별표 2,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1과 같이 한다.

제20조(「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조례는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 조제2항"을 "조례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2항"으로 한다.

제2조 중 "이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"를 "이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2항"으로 한다. 제5조제1항 중 "주택으로서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조제1항"을 "주택으로서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"으로 한다.

제21조(「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」의 개정)

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4.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
- 5.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장
- 6. 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
- 7. 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성분국총괄팀장

제22조(「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국군방첩사령부제339방첩부대 방첩관

제23조(「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"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"을 "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"으로 한다.

제24조(「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"율대리 1029번지"를 "월평로 171"로 한다.

제25조(「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 제목 "(지역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)"을 "(지역내 자재 및 장비 사용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"을 "건설업자가"로 한다.

제26조(「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"인력육성담당이"를 "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이"로, "인력육성담 당자"를 "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자"로 한다.

제27조(「고성군 농업유산 둠병 보전·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농업유산 둠병 보전 ·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"기획감사담당관"을 "기획예산담당관"으로 한다.

제28조(「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여성"을 "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"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폐경과 관련된"을 "노화 또는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라"로 한다.

제3조 중 "여성"을 "증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【별표 1】**<현행>**

# 주부민방위기동대 상황별 업무분장표(제9조제1항 관련)

구 분	주 요 임 무
	1.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
	2. 민방위창고 점검
	3. 민방위 교육·훈련 유도훈련 참여
	4.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
	5.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
5-1 )]	6.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
평 시	7. 비상연락체계 유지(주민신고 요원)
	8. 재난·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
	9. 우범지역 순찰,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
	안전지킴이역할 수행
	10.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,
	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
	1.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
	2.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
	3.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・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
	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
□방위사태 □・재난발생	4.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
기 전 월 28   시	5. 비상급수・관리 지원
	6. 사후관리 복구 지원
	7. 재난 해제ㆍ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
	8. 기타 도지사,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
	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

#### 【별표 1】<개정 2000.00.00>

# 여성민방위기동대 상황별 업무분장표(제9조제1항 관련)

구 분	주 요 임 무
	1. 민방위 시설장비 점검
	2. 민방위창고 점검
	3. 민방위 교육·훈련 유도훈련 참여
	4. 학교 등 민방위 교육 보조강사
	5. 실전체험훈련장 실기보조강사 참여 및 운영지원
जने भी	6. 주민의 생활안전 예방활동 및 홍보
평 시 	7. 비상연락체계 유지(주민신고 요원)
	8. 재난·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
	9. 우범지역 순찰, 청소년 선도 등 지역 사회
	안전지킴이역할 수행
	10. 그밖에 민방위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,
	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
	1. 군사작전 필요 물자운반 노력 지원
	2.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지원
	3. 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・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
	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
민방위사태 ・재난발생 시	4. 대피안내 유도 및 교통통제 지원
	5. 비상급수ㆍ관리 지원
	6. 사후관리 복구 지원
	7. 재난 해제ㆍ복귀 지원 및 재난피해자 지원
	8. 기타 도지사, 군수가 민방위 활동 및 재난
	예방ㆍ복구 활동 지원에 필요로 하는 사항

【별표 2】<개정 2017. 11. 9. 조 2366> **<현행>** 

# 주부민방위기동대 반별 업무분장표(제9조제2항 관련)

반 명	분 장 업 무
지휘반	<ol> <li>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</li> <li>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기동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</li> </ol>
재난활동반	<ol> <li>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・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</li> <li>민방위시설, 장비, 창고 등 점검</li> <li>민방위 교육・훈련 유도훈련 참여</li> <li>학교,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</li> <li>재난・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</li> <li>비상대비훈련(을지연습, 화랑훈련, 충무훈련 등) 지원</li> </ol>
생활안전반	<ol> <li>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</li> <li>우범지역 순찰,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</li> <li>안전캠페인 활동</li> <li>취약계층 인원·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</li> <li>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</li> </ol>

【별표 2】<개정 2017. 11. 9. 조 2366> <개정 2000.00.00>

# 여성민방위기동대 반별 업무분장표(제9조제2항 관련)

반 명	분 장 업 무
지휘반	<ol> <li>기동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</li> <li>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</li> <li>대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</li> <li>기동대의 기율에 관한 사항</li> </ol>
재난활동반	<ol> <li>민방위 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에 관한 사항</li> <li>민방위사태 시 현장수습・복구 초기대응 및 신속 대처를 위한 자발적 지원</li> <li>민방위시설, 장비, 창고 등 점검</li> <li>민방위 교육・훈련 유도훈련 참여</li> <li>학교, 실전체험훈련장 등 보조강사 지원</li> <li>재난・안전 위험지역 예찰 활동</li> <li>비상대비훈련(을지연습, 화랑훈련, 충무훈련 등) 지원</li> </ol>
생활안전반	1. 주민의 생활안전예방 활동에 관한 사항 2. 주민의 생활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. 우범지역 순찰, 청소년 선도 등 자율방범 활동 4. 안전캠페인 활동 5. 취약계층 인원·시설 등 안전 돌봄 지원 6. 심폐소생술 등 홍보 및 활동

2023년 7월 10일(월)

[별지 제1호 서식](제5조 관련) <<del>현행</del>>

	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				
	성 명		생년월일		
지 원 자	주 소				
(신청인)	전 화 번 호	자택: 휴대폰:	세대주와 의 관계	의	
	직 업		학 력		
보유기술	종 목				
및 기 능	취 득 일				
위와 같이	위와 같이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.				
		k	년 월 Ç	일	
지원자 (서명 또는 인)					
구비서류 제 출 기술·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,					

주부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						
지원인	성	명			생년월일	
(신청인)	주	소				
위의 사람은		년	옏	일에 주부민방위 년	월 일	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다. 성군수 (인)

# [별지 제1호서식](제5조 관련) <개정 2000.00.00>

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 지원서									
	성	명			생년	월 일			
지 원 자	주	소					,		
(신청인)	전 화	번 호	자택: 휴대폰:		세 대 의			의	
	직	업			학	력			
보유기술	종	목							
및 기 능	취득	두 일							
위와 같이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합니다.									
				년	월	[	일		
지원자 (서명 또는 인)									
구비서류 제 출 기술·자격증 소지자는 관계증명서 사본 1부,									

여성민방위기동대 지원 필증					
지원인	성	명	생년월일		
(신청인)	주	소			
위의 사람은	년	l 월	일에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입을 지원하였음을 증명합니( 년 월 일 고성군수 (인)	다.	

#### [별지 제2호 서식] (제5조 관련) <현행>

# 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

(읍 면)

일 런 번 호	성		주	소	직	업	연락처	보유기술	편 성 연월일	비고
호	생년	[월일						기능명칭		

[별지 제2호서식] (제5조 관련) <개정 2000.00.00>

# 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편성자 명부

(읍 면)

									(日
일 편 번 호	성 명	주	소	직	업	연락처	보유기술 및	편 성	비고
번 호	생년월일			,			기능명칭	연월일	
		-							
		-							
		_							
		-							

# 신ㆍ구조문대비표

# 제1조(「고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・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본청 <u>국장·담당관·</u>	③ <u>부서장, 직속기관</u>
과장, 직속기관의 장(농업기술	<u>내 부서장</u>
센터 과장 포함), 사업소장으로	
한다.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4조(회의) ① (생 략)	제4조(회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	②
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	
회의 <u>개최 2일</u> 전까지 간사에게	<u>개최일 7일</u>
제출하여야 한다.	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	3
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번호를	
부여하고, 그 유인물을 회의 <u>개</u>	
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	최일 3일 전
하여야 한다.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#### 제2조(「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	제11조(위원의 위촉 해제)
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	
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.	
다만,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	
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	
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제9조제1항</u> 에 해당함에도 불	4. <u>제10조제1항</u>
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	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
#### 제3조(「고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	② 위원장 • 부위원장은 위원 중
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	에서 호선한다.
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	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③
다만,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	
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	
무원을 의미한다)인 위원이 전	
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	
없다.	<u>.</u>

- 1. 당연직 위원: 기획예산담당 <u>장</u><타법개정 2022.11.4. 조 27 <u>장</u>-----60 >
- 2. (생략)
- 1. -----관, 산업건설국장, 문화환경국 -- 문화관광과장, 경제기업과
  - 2. (현행과 같음)

#### 제4조(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비용추계의 대상) ① <u>군수</u>	제3조(비용추계의 대상) ① <u>고성</u>
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	<u> 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</u>
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	
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	
서(별지 제1호서식)를 작성하여	
야 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## 제5조(「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대장비치) <u>부과담당·세입</u>	제8조(대장비치) <u>세정담당·부과</u>
<u>담당·과표관리담당</u> 은 별지 제	<u>담당·세입징수담당</u>
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	
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	
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	
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	
한 사항을 기록, 정리하여야 한다.	

# 제6조(「고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검토) 업무담당부서에	제5조(지원검토)
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	
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	
우에 한정하여 <u>「고성군 공용차</u>	<u>「고성군 공용차</u>
량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	<u>량 관리 규칙」</u>
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	
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	
출하여야 한다.	

# 제7조(「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	제10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
<u>액공제)</u> ① 법 제92조의2제1항	세액공제) ①
각 호에서 "조례로 정하는 금	
액"은 다음과 같다.	
1. <u>자동이체 방식에 의한</u> 납부	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
만을 신청한 경우: 고지서 1장	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
당 300원	<u>식에 따른</u>
2. <u>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</u>	2.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-
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	
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600	
원	
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 청한 경우: 고지서 1장당 600	 2. <u>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</u> 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#### 제8조(「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	제32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
가 및 대부) ① ~ ③ (생 략)	가 및 대부) ① ~ ③ (현행과
	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	4
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<u>「지방</u>	「지방
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	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
<u>관리에 관한 규칙</u> 을 따른다.	<u>령」</u>

# 제9조(「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예산회계) ① 복지회관의	제9조(예산회계) ①
수입과 지출은 <u>「지방자치단체</u>	「지방자치단체
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	회계관리에 관한 훈령
한 규칙」에 따라 회계관리를	
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	<u> &lt;삭 제&gt;</u>
<u>것을 제외하고는 「지방재정</u>	
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고성	
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용한다.	

# 제10조(「고성군 장애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치) 고성군 장애인 복지	제3조(위치)
센터(이하 "장애인 복지센터"리	}
한다)는 고성군 고성읍 <u>동외</u> 로	<u> 송학고분</u>
<u>156번길 36</u> 에 둔다.	<u>로 195</u>

#### 제11조(「고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・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	③
관, 주민생활과장, 복지지원과	
장, <u>보건소장</u> 으로 하고, 위촉직	<u>건강증진과장</u>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	
가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	
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	
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,	
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	
장애인으로 한다.<타법개정 20	
22.11.4. 조 2760>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
#### 제12조(「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준용) <이동 2016.02.23.	제24조(준용)
조2257>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	
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	
에 관하여는「고성군 지방보조	
금 관리 조례」 및 <u>「지방자치</u>	「지방자치
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	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-
<u>에 관한 규칙」</u> 등 관계규정을	
따른다.	

#### 제13조(「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	제8조(간사)
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	
사는 아동복지업무 <u>담당주사로</u>	<u>담당이 된다</u> .
<u>한다</u> .	

#### 제14조(「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구성) ①・② (생 략)	제2조(구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고	③ 열린
성군 민원봉사과장, 재무과장,	민원과장, 재무과장
건축개발과장, 도시교통과장으	

로 하고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하다.

1. • 2. (생략)

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제6조(위원의 위촉 해제) -----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- 1. ~ 4. (생략)
- 5. 법 제72조제1항의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 우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 략)

- ②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 담 당주사와 담당자가 된다.
- ③ (생 략)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제1항 -

제9조(간사와 서기) ① (현행과 같 음)

- ② ----- 담당 과 -----.
- ③ (현행과 같음)

#### 제15조(「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혀 했 개 정 안 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제4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~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 ④ 기금의 출납은 「지방자치단 ④ ----- 「지방자치단 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| 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| ---관한 규칙 을 따른다.

### 제16조(「고성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간사와 서기) ① (생 략)	제21조(간사와 서기) ①(현행과같음)
②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부서장	2
이 되고 서기는 관광업무 <u>담당</u>	<u>담당</u>
<u>주사가</u> 된다.	<u>o</u> ]

### 제17조(「고성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・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	제13조(준용)
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고성	
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,「고	
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	
「고성군 재무회계 규칙」을 준	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
용한다.	<u>한 훈령  </u>
	,

### 제18조(「고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~ ③	제9조(기금의 운용관리) ① ~ ③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④ 기금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	4
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	
「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	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
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_ 을 따른다.	한 훈령

### 제19조(「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	고성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
운영 조례	<u> 운영 조례</u>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사회	제1조(목적)
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	
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초기대응	
과 현장수습・복구 및 신속한	
대처를 위하여 고성군 <u>주부민방</u>	<u>여성민방</u>
<u>위기동대</u> 의 설치 및 운영 등에	위기동대
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	
한다.	
제2조(설치) 군수는 <u>주부민방위기</u>	제2조(설치) <u>여성민방위기</u>
<u>동대</u> (이하 "기동대"라 한다)를	<u>동대</u>
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읍 • 면별	
로 지역대를 설치할 수 있다.	
제3조(명칭) 기동대의 명칭은 다	제3조(명칭)
음 각 호와 같이 한다.	
1. 군 : 고성군 <u>주부민방위기동</u>	1 <u>여성민방위기동대</u>
<u>대</u>	
제2장 편성 2. 읍·면 : <u>고성군</u>	제2장 편성 2. 읍·면 : <u>고성군</u>
<u>주부민방위기동대</u> ○○읍·면	<u>여성민방위기동대</u> ○○읍·면
지역대	지역대

제	4조(	면기	성기	준)	(1		대	원-	은	기	동
	대의	관	· 한	구역		내	에	ア	구	하	는
	<u>만20</u>	세	0]/	상의	2	주트	<u></u>	중	기	원	하
	는 시	- 람	<u> </u>	로서	し	구음	÷ 2	4	호	의	사
	항을	고	.려	하여	Ų	년성	성힌	디			

- 1.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주부
- 2.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이 강한 주부
- 3. 민방위관련 전문지식·기술 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부
- ② 대원(대장, 부대장 포함 전대원)의 정년은 <u>만 70세</u>로 한다. 정년에 달한 날이 포함되면 그해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. 제5장 <u>고성군 주부민방위기동대</u>연합회 등

제19조(구성) ① 읍·면기동대의 상호간 정보교환, 대원의 친목 도모 등 민방위 발전을 위하여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(이하 "연합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20세 이상의 여성
1
<u>여성</u>
2
<u>여성</u>
3
<u>여성</u> ②
70세
,
제5장 <u>고성군</u>
<u>여성민방위기동대</u> 연합회 등
제19조(구성) ①
여선미반의기독대
<u> 여성민방위기동대</u>
<u>여성민방위기동대</u>

### 제20조(「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<u>조례는 「화재예</u>	제1조(목적) <u>조례는 「소방시</u>
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	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	제10조제2항
<u>항</u> 에 따라 고성군의 주택 화재	
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	
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	
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	
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	
다.	<b>.</b>
제2조(정의)"주택용 소방시설" <u>이</u>	제2조(정의) <u>이</u>
란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	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
•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	<u>관한 법률」제10조제2항</u>
률 시행령」제13조에 따른 소화	
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	
다.	<b>.</b>
제5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 지원	제5조(지원 대상 및 범위) ①
대상은 고성군(이하 "군"이라	
한다)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	
이 거주 중인 <u>주택으로서 「화</u>	<u>주택으로서 「소</u>
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・유지	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
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계8	<u>률」 제10조제1항</u>
<u>조제1항</u> 각 호의 주택으로 한	
다.	<u>.</u>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 제21조(「고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위원회는	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
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	
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	
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	
호의 자가 된다.	<b>.</b>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육군8358부대 제2대대장	4. 육군제8358부대 2대대장
5. 경상남도고성교육청교육장	5.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교육
	<u>장</u>
6. 한국전력공사고성지점장	6. 한국전력공사고성지사장
<u>7. KT 고성지점장</u>	7. KT경남서부지사통영지점고
	<u>성분국총괄팀장</u>
8. (생 략)	8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
### 제22조(「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 ~ ④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 ~ ④ (현행과 같
	음)
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	5
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	
다.	<b>.</b>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<u>5. 33</u>	9군/	<u> </u>	L지원	부대	안보지
<u>원</u> 된	<u> </u>				
0	1.0	/ 311	-1-\		

6. ~ 13. (생략)

⑥ (생략)

- 5. 국군방첩사령부제339방첩부 대 방첩관
- 6. ~ 13. (현행과 같음)
- ⑥ (현행과 같음)

### 제23조(「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생	제11조(관계규정의 준용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	②
대하여는 <u>「지방자치단체 예산</u>	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
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	리에 관한 훈령
<u>칙</u> _을 따른다.	

# 제24조(「고성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치) 고성군 화물자동차	제3조(위치)
공영차고지(이하 "공영차고지	
"라 한다)는 경상남도 고성군	
고성읍 <u>율대리 1029번지</u> 에 둔	<u>월평로 171</u>
다.	

### 제25조(「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역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	제6조(지역내 자재 및 장비 사용)
<u>용)</u> 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	②
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	
내 생산자재를 <u>관급자재로 공급</u>	<u>건설업자가</u>
<u>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</u> 사용하	
도록 권장할 수 있다.	

### 제26조(「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회의 등) ①・② (생 략)	제13조(회의 등) ①・② (현행과
	같음)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	③
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	
사는 <u>인력육성담당이</u> 되고 서기	<u>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이</u> -
는 <u>인력육성담당자</u> 가 된다.	<u>농업인의 날 업무 담당자</u>

### 제27조(「고성군 농업유산 둠벙 보전・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	행	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	구성) ①・②	(생	제7조(위원회 구성) ①・② (현행
략)			과 같음)

③ 당연직 위원은 <u>기획감사담당</u>
관, 문화관광과장, 농촌정책괴
장으로 한다.

④ (생 략)

③	<u>기획예산담당</u>
<u>관</u>	
<b>.</b>	
④ (현행과 같음)	

## 제28조(「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갱년기 건	제1조(목적)
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	
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<u>여성</u> 의	<u>증상을</u>
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	<u>겪고 있는 대상자</u>
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	제2조(적용범위)
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.	
1. "갱년기"란 <u>여성의 노화 또는</u>	1 <u>노화 또는 질병으</u>
질병에 의해 폐경과 관련된	로 인한 성호르몬 감소에 따
심리적·신체적 변화(갱년기	<u>라</u>
증후군)를 겪는 시기를 말한	
다.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조(군수의 책무) 고성군수(이	제3조(군수의 책무)
하 "군수"라 한다)는 갱년기 <u>여</u>	즐
<u>성</u> 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	<u>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</u>
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	
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	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군정조정위 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  - 성명(단체명):
  - 주 소:
  - 전화번호:
 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수정안	수정사유
71/81	찬성	반대	ተ⁄8 ፤	ተ/8/ነጠ

고성군 공고 제2023-1171호

#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유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 건을 일괄개정하는데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10. 고 성 군 수

1. 조례명: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
- 나.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8건의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및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
- 3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  - (현행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- → (개정)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#### 4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
 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: (055)670-2083, FAX: (055)670-2059

####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(전화: 055-670-208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유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」의 개정)

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2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3조(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4조(「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」의 개정)

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5조(「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6조(「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」의 개정)

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7조(「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」의 개정)

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8조(「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2401호 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 중 "2023년 12월 31일"을 "2028년 12월 31일"로 한다.

	_
ㅂ	
ш.	7.1
_	<u> </u>

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### 제1조(「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	제4조의2(존속기한)
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	
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8년 12월 31일</u>
지로 한다.	

### 제2조(「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	제5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	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</u>	<u>2028년 1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<u> 2월 31일</u>

### 제3조(「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	제4조의2(존속기한)
법」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	
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 까	<u>2028년 12월 31일</u>
지로 한다.	

### 제4조(「고성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	제3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 따라	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	<u>2028년 1</u>

<u>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2월 31일----.

제5조(「고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의2(존속기한) 「지방재정	제2조의2(존속기한)
법」 제9조에 따라 대지보상특	
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</u>	<u>2028년 12</u>
<u>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월 31일

### 제6조(「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>	기한) 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
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에	따라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	<u> 23년</u> <u>2028년 1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<u> 2월 31일</u>

### 제7조(「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	제4조의2(특별회계의 존속기한) -
「지방재정법」제9조에 따라	
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</u>	<u>2028년 1</u>
<u>12월 31일</u> 까지로 한다.	<u> 2월 31일</u>

### 제8조(「고성군 사회복지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고성군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	고성군조례 고성군 사회복지특별
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	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
제3조(유효기한) 이 조례는 <u>2023</u>	제3조(유효기한) <u>2028년</u>
<u>년 12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	<u>12월 31일</u>
다.	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특별회계 존속기한 일괄 연장을 위한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  - 성명(단체명):
  - 주 소:
  - 전화번호:
 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	의견	수정안	수정사유
개 8 단	찬성	반대	ተ⁄8 ፤	T 78 7 F T

고성군 공고 제2023-1172호

#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하는데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10. 고 성 군 수

1. 조례명: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「민법」 및 「행정기본법」의 일부개정(시행 2023. 6. 28.)에 따라 우리군 자치법규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,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

- 3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  - 「민법 및 행정기본법」(만 나이 통일법) 일부개정에 따라 나이 규정에서 "만" 표 시를 삭제하여 정비
- 4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가. 의견제출 사항
  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  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. 주소 및 전화번호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
 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: (055)670-2083, FAX: (055)670-2059

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(전화: 055-670-208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부

고성군 조례 제 호

###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만1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5호 중 "만1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3조(「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만 19세"를 "19세"로 한다.

제4조(「고성군민상 조례」의 개정)
고성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만 65세"를 "65세"로 한다.
제5조(「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만 1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6조(「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7호 중 "임신·출산·만18세"를 "임신·출산·18세"로 한다.

제7조(「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3호 중 "만 18세"를 "18세"로 한다.

제8조(「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"를 "3개월 이상 12세 이하"로 한다. 제9조(「고성군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"만 11세"를 "11세"로 한다.

제10조(「고성군 체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
고성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 중 "만 65세"를 "65세"로 한다.
제11조(「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"만 46세 이상 만 65세"를 "46세 이상 65세"로 한다.

제12조(「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"만 65세"를 "65세"로 한다.

제13조(「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7호 중 "만 65세"를 "65세"로 한다.

제14조(「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0조제1항제3호 중 "만65세"를 "65세"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[별표 1] <현재>

#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### 1. 관람료

(단위 : 원)

2023년 7월 10일(월)

	관 람 료			
구 분	어린이	청소년, 군 인	어 른	비고
개 인	1,500	2,000	3,000	-
단 체 (30명이상)	1,000	1,500	2,500	-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
고성군민	500	500	1,000	-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-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

※ 어린이: 만 3세 ~ 만 12세

※ 청소년: 만 13세 ~ 만 18세

### 2. 주차료

(단위 : 원)

			( ) ( ) ( )
	주	차 료	
구 분	일 반	경차, 저공해차량, 장애인 탑승차량	비고
소 형	2,000	1,000	
대 형	3,000	1,500	소형 외 모든차종

※ 소형: 승용차. 15인승 이하 승합차. 1톤 미만의 화물차

※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.

※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
### 3. 로프어드벤처

(단위 : 원)

	요금		
구 분	개인	단체 (30명 이상)	비고
오니 코스	3,000	2,000	※ 사용연령: 만 7세 ~ 만 12세
고니 코스	2,000	1,500	※ 사용연령: 만 3세 ~ 만 6세

■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[별표 1] <개정 2000. 00. 00.>

#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(제8조제2항 관련)

### 1. 관람료

(단위 : 원)

	관 람 료			
구 분	어린이	청소년, 군 인	어 른	비고
개 인	1,500	2,000	3,000	-
단 체 (30명이상)	1,000	1,500	2,500	- 관광지 연계 할인 적용
고성군민	500	500	1,000	- 협의지자체 주민 적용 - 국내 자매결연도시 주민 혜택 적용

※ 어린이: 3세 ~ 12세

### 2. 주차료

(단위 : 원)

			( ) ( ) ( )
	주	차 료	
구 분	일 반	경차, 저공해차량, 장애인 탑승차량	비고
소 형	2,000	1,000	
대 형	3,000	1,500	소형 외 모든차종

- ※ 소형: 승용차, 15인승 이하 승합차, 1톤 미만의 화물차
- ※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.
- ※ 30분 이내 회차하는 차량은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다.

### 3. 로프어드벤처

(단위 : 원)

	요금		
구 분	개인	단체 (30명 이상)	비고
오니 코스	3,000	2,000	※ 사용연령: 7세 ~ 12세
고니 코스	2,000	1,500	※ 사용연령: 3세 ~ 6세

### 신ㆍ구조문대비표

## 제1조(「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	제2조(용어의 정의)
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	
같다.	
1. "청년"이란 <u>만18세</u> 이상 45세	1 <u>18세</u>
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	
개별사업의 관계 법령 규정에	
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.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
## 제2조(「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다자녀세대"란 부모와 자녀	5
모두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	
있는 1가구 2자녀 이상 세대	
중 <u>만18세</u> 이하 자녀가 있는	<u>18세</u>
세대를 말한다.	
6. ~ 10. (생 략)	6. ~ 10. (현행과 같음)

# 제3조(「고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	
같다.	
1. "아동 및 청소년"이란 <u>만 19</u>	1 <u>19세</u>
<u>세</u> 미만으로 군내에 주소를	
둔 사람을 말한다.	<b>.</b>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
# 제4조(「고성군민상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상자 자격) ① (생 략)	제4조(수상자 자격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	②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	
에서 공고일 현재 <u>만 65세</u> 이상	<u>65세</u>
인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히	
시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	
람에 대하여는 나이 제한을 두	
지 아니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
### 제5조(「고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위원의 자격) ① 위원은 공	제6조(위원의 자격) ①
개 모집한 날 현재 <u>만 18세</u> 이	<u>1</u> 8세
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 제6조(「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위기상황 인정기준) 군수가	제3조(위기상황 인정기준)
「긴급복지지원법」제2조제8호	
에 따라 "지방자치단체의 조례	
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"란	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경우를 말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주소득자의 <u>임신·출산·만1</u>	7 <u>임신·출산·18세</u>
<u>8세</u> 미만의 자녀양육 등으로	
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	
어려운 경우	
8. ~ 12. (생 략)	8. ~ 12. (현행과 같음)

## 제7조(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·관리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용어의 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"자녀"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	3
고 있는 <u>만18세</u> 미만의 자녀	<u>18세</u>
를 말한다.	

# 제8조(「고성군 병원이용아동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병원이용아동"이란 고성군	1
(이하 "군"이라 한다)에 주민	
등록상 주소를 둔 만 3개월 이	<u>3</u> 개월 이상
<u>상 만 12세 이하</u> 아동 중 병원	12세 이하
통원이나 입원이 필요한 아동	
을 말한다.	·.
2. ~ 4. (생 략)	2. ~ 4. (현행과 같음)

# 제9조(「고성군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어린이"란 고성군(이하 "군"	1
이라 한다) 관내 거주하는 만	<u>11</u>
<u>11세</u> 이상 13세 미만의 사람	세
또는 관내 초등학교 5・6학년	
에 재학하는 미성년자를 말한	
다.	
2. • 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
## 제10조(「고성군 체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노인체육"이란 <u>만 65세</u> 이상	5 <u>65세</u>
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	
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, 정신	
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	
체육활동을 말한다.	
6. ~ 11. (생 략)	6. ~ 11. (현행과 같음)

## 제11조(「고성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	제2조(정의)
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중장년층"이란 고성군에 주	1
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46세</u>	<u>4</u> 6세 이상
<u>이상 만 65세</u> 미만인 사람을	65세
말한다.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
## 제12조(「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고령	제2조(정의)
영세농업인"이란 「농업·농촌	
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	
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년도	
1월 1일 기준 <u>만 65세</u> 이상이면	<u>65세</u>
서 세대당 1만5천제곱미터 이하	
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	
한다.	<u>.</u>

# 제13조(「고성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) ①	제4조(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) ①
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조의	
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의	
본인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.	
다만,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	
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고성군(이하"군"이라 한다)	7
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6</u>	<u>65</u> 체
5세 이상의 진료 대상자	
8. ~ 10. (생 략)	8. ~ 10. (현행과 같음)

### 제14조(「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관람료의 정의) ① 다음	제2조(용어의 정의)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	
한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주민등록증 등 신분확인이 가능한	1
증명서를 소지한 만 65세 이상 경	65세
로자	
4. ~ 19. (생 략)	4. ~ 19. (현행과 같음)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고성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 정조례안
  - 성명(단체명):
  - 주 소:
  - 전화번호:
 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안	찬반의견		스 기 시	<u></u> አግክዕ
	찬성	반대	수정안	수정사유

고성군 공고 제2023-1173호

#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 입법예고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일 괄폐지하는데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7. 10. 고 성 군 수

1. 조례명: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
#### 2. 개정이유

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(死文化)되었거나 유명무실하게 된 조례를 일괄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

#### 3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
가.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(안 제1조)

- 고룡이 상품권 사용기한 만료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나.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안 제2조)
-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청산에 따라 조례 불필요

#### 4. 의견 제출

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
 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: (055)670-2083, FAX: (055)670-2059

####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(전화: 055-670-208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 1부

고성군 조례 제 호

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
제1조(「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) 고성군 마스코트 「고룡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폐지)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고성군 마스코트「고룡 이」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등 폐지조례안
  - 성명(단체명):
  - 주 소:
  - 전화번호:
 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폐지안	찬반의견		스 기 시	<u></u> ታህ ነ ዕ
	찬성	반대	수정안	수정사유

고성군 공고 제2023-1174호

#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규칙을 일괄개정하는데에,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고성군 조례·규 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> 2023. 7. 10. 고 성 군 수

1. 규칙명: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#### 2. 개정이유

- 가. 법령 제·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,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경우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므로,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- 나.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및 감사 지적사항 정비 등 각 부서별 자치법규 개정 추진 에 따른 절차적 중복 등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와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함

#### 3.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의 제·개정, 폐지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- 나. 행정안전부, 법제처 기획정비 개선 과제 등 반영
- 다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,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

#### 4. 의견 제출

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는 202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(참조: 기획예산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의견제출 사항

- 1)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2)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나. 의견 제출처: 고성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
  - 1) 주소: (52943)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, 고성군청 기획예산담당관
  - 2) 전화: (055)670-2083, FAX: (055)670-2059

#### 다. 제출 방법 및 문의처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통계담당(전화: 055-670-208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일부개정규칙안 1부

고성군 규칙 제 호

#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일부개정규칙안

제1조(「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1항 중 "기획감사담당관"을 "기획예산담당관"으로 한다.

제2조(「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」의 개정)

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호 중 "「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3조"를 "「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4조"로 한다.

제3조(「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제1조의2제1호"를 "공무원이 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」제1조의3제1호"로 한다.

제4조(「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항제1호 중 "2억원"을 "4억원"으로, "1억원"을 "2억원"으로, "8천만원"을 "1억 6천만원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5천만원"을 "1억원"으로 한다.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.

제5조(「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」의 개정) 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"기획감사담당관"을 "기획예산담당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[별표 1] (현 행)

# 고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(제2조제1항 관련)

관 직	명	본 청	의 회	제1관서	기타관서·임시관서	읍∙면	
회계책 2	임 관	행정복지국장	-	-	_	_	]
징 수	관	행정복지국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	관서의 장	읍·면장	
분 임 징 숙	수 관	재무과장,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·과장	_	세입업무담당과장 (농업기술센터) 세입업무담당	_	_	
재 무	관	행정복지국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)	_	읍·면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)	
분 임 재 5	무 관	재무과장, 각 담당관·과장 (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	-	농업기술센터 회계업무담당과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)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 (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	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	_	
		-11-11-1-1-1		각 관서 회계업무담당 (농업기술센터 제외)			
총괄채권관	리관	행정복지국장	-	_	_	_	
채 권 관 리	의 관	소관 담당관·과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	관서의 장	읍·면장	
총괄부채관	리관	기획감사담당관	_	-	_	_	
부 채 관 리	의 관	소관 담당관·과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	_	_	
총괄기금관	리관	기획감사담당관	_	_	_	_	
통 합 지 출	출 관	재무과장	_	_	_	_	
지 출	원	경리담당	의사담당	회계업무담당	-	경리업무담당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)	]
수 입 금 출	납 원	세입담당,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	의사담당	세입업무담당	세입업무담당	세입업무담당	
일상경비출	납원	각 담당관·과 회계업무담당	-	농업기술센터 각 과 회계업무담당 보건소 각 과 각 관서 회계업무담당	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(자)	_	t
세 입 세 출	출 외	경리업무담당자	경리업무담당자	경리업무담당자	서무업무담당(자)	경리업무담당자	
현금출발	납 원	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					

고 1. 담 당: 각 담당·팀 등의 6급 이상

2. 담당자: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

■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[별표 1] (개 정)

# 고성군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(제2조제1항 관련)

관 직 명	본 청	의 회	제1관서	기타관서·임시관서	읍·면
회 계 책 임 관	행정복지국장	-	_	-	_
징 수 관	행정복지국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	관서의 장	읍·면장
분 임 징 수 관	재무과장, 세외수입업무 주관 담당관·과장	-	세입업무담당과장 (농업기술센터, 보건소) 세입업무담당	-	-
재 무 관	행정복지국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)	-	읍·면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)
분 임 재 무 관	재무과장, 각 담당관·과장 (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	_	농업기술센터, 보건소 회계업무담당과장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) 농업기술센터, 보건소 각 과장 (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 각 관서 회계업무담당 (농업기술센터, 보건소	관서의 장 임시관서의 장	_
총괄채권관리관	행정복지국장		제외)		
		11 CO O O T	7L/10L7F		- 읍•면장
	소관 담당관·과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	관서의 장	급•면장
총괄부채관리관	기획예산담당관			_	_
부 채 관 리 관	소관 담당관·과장	사무과장	관서의 장	_	_
총괄기금관리관	기획예산담당관	-	_	_	_
통 합 지 출 관	재무과장	_	-	_	-
지 출 원	경리담당	의정담당	회계업무담당	-	경리업무담당 (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)
수 입 금 출 납 원	세입담당,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	의정담당	세입업무담당	세입업무담당	세입업무담당
일상경비출납원	각 담당관·과 회계업무담당	-	농업기술센터, 보건소 각 과 회계업무담당 각 관서 회계업무담당	경리업무담당 또는 서무업무담당(자)	-
세 입 세 출 외	경리업무담당자	경리업무담당자	경리업무담당자	서무업무담당(자)	경리업무담당자
현 금 출 납 원	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2인 이상이 업무처리				

비고 1. 담 당: 각 담당·팀 등의 6급 이상

2. 담당자: 6급 이하의 실무 담당자

# 신ㆍ구조문대비표

# 제1조(「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구	제6조(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구
성) ①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한	성) ①
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(이하	
"위원회"라 한다)의 위원장은	
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<u>기</u>	
획감사담당관이 되며, 위원 중	획예산담당관
소속공무원은 예산・회계・세	
무・감사 및 기술분야담당공무	
원 중 군수가 임명하는 자와 예	
산회계분야 또는 성과금평가 등	
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	
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	
로 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# 제2조(「고성군 소송사무처리 규칙」의 개정)

연 행	개 성 안
제3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	제3조(정의)
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"소송담당관"이란 <u>「고성군</u>	5 <u>「고성군</u>
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3조	<u>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4조</u> -

에 따라 소송업무를 분장사무

로 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 -----.

# 제3조(「고성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 임용권자	제2조(의원면직의 제한)
(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	
함한다. 이하 같다)는 의원면직	
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	
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	
니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	,
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<u>공무원</u>	<u>공무원</u>
이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	이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
정」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	<u>정」제1조의3제1호</u>
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	
경우에 한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
# 제4조(「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	제2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
정) ① ~ ⑤ (생 략)	정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속기	6
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중 다	
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는 본	

청의 재무관이 담당한다.

- 1.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
   억원, 전문공사의 경우 1억원,
  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
   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
- 2. 추정가격 <u>5천만원</u>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·구매 및 용역의 입찰

1 <u>4</u>
<u>억원 2억원</u> -
<u>1억</u>
<u> 6천만원</u>
2 1억원

### 제5조(「고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」의 개정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생 략)	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(현행과
	같음)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	②
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	
<u>기획감사담당관</u> 이 그 직무를 대	<u>기획예산담당관</u>
행한다.	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- □ 자치법규명: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고성군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  - 성명(단체명):
  - 주 소:
  - 전화번호:
  - 의견 내용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게 기 시.	찬반의견		스 및 ol	<u>አ</u> ግክዕ	
개정안	찬성	반대	수정안	수정사유	

고성군 고시 제2023-121호

####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·제3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7. 5. 고 성 군 수

#### ○ 도로명주소 부여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	
(별지참조)						

#### ○ 도로명주소 변경

변경 전	변경 후	도로명주소	변경사유		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	효력발생일			
(별지참조)					

#### ○ 도로명주소 폐지

도로명주소	폐지고시일	폐지사유
	(별지참조)	

-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열린민원과(☎055-670-2696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- 도로명주소 사용
  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$\bigcirc$	도로명주소	변경	등
$\sim$			0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# 도로명주소 부여

연 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사유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거류면 당동리 346	거류면 당동2길 30-3	2023.07.05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거류면 당동리)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	
2	상리면 신촌리 276	상리면 신촌2길 149-4	2023.07.05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상리면 신촌리)을 이용하는 두번째 도로	
3	대가면 연지리 731-3	대가면 연지1길 43-160	2023.07.05.	건물번호부여신청	행정구역명(대가면 연지리)을 이용하는 첫번째 도로	

고성군 고시 제2023 - 123호

#### 소하천구역의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(변경)에 관한 고시

「소하천정비법」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·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(변경)하였음을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.

이에 따른 관련 도서(토지세목, 지형도면)는 고성군청 건설과에 비치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2023. 7. 10. 고 성 군 수

수계				소하천 구간		소 하 천	결정(변경)
(水系)명	소하천	현명	시 작 하 는 지 점	끝 나 는 지 점	소 하 천 길이(m)	구 역 면적(m²)	월(3(원성) 사유
낙동강	평동천	당초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796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14-2	1,994	34,341	소하천
남해	3중신	변경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796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14-2	2,100	48,546	정비사업 시행

#### 붙임 1. 소하천구역으로 포함된 토지의 세목조서

2. 해당 소하천구역의 지형도면으로서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

#### 1. 토지조서 총괄표

가. 지목별 편입토지 총괄

			지목별		
구 분	필 7	시 수	면 조	( m² )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계	100	163	34,341	48,546	
천	7	8	23,059	23,320.4	
답	47	91	2,987	14,102.3	
도	24	25	5,296	6,577.0	
구	4	8	1,431	1,509.8	
임	11	11	1,381	1,394.0	
<u></u> 전	4	10	81	990.0	
대	1	5	59	546.8	
<del></del>	2	2	47	47.0	
 과	_	2	_	39.6	
잡	_	1	_	19.1	

#### 나. 소유자별 편입토지총괄

			소유별		
구 분	<b>当</b> 2	지 수	면 조	( m² )	비고
	기정	변경	기정	변경	
계	100	163	34,341	48,546	
국(국토교통부)	11	10	23,925	6405.1	
국(농림축산식품부)	4	11	163	4835.8	
국(기획재정부)	5	4	3,512	171.0	
공(고성군)	21	55	1,990	11677.3	
사 유 지	59	83	4,751	25456.8	

#### 2. 토지조서

일련	소기	내지	-) II	면 조	(m²)	0 = 303		소유자	n) =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1	대가면 연지리	132	천	638	45	-	심재화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58	
2	대가면 연지리	657-4	답	581	9	-	청송심씨 고성시달문중	고성읍 무량리 382	
3	대가면 연지리	665	답	96	54	-	심상보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58	
4	대가면 연지리	687	답	278	10	_	정영갑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62	
5	고성읍 무량리	326-2	도	126	67	_	고나	충무시 정량동 208	
6	고성읍 무량리	326-5	도	62	36	_	고성군	-	
7	고성읍 무량리	326-6	도	8	8	-	고성군	_	
8	고성읍 무량리	326-8	도	351	310	_	고성군	-	
9	고성읍 무량리	326-10	도	60	29	_	고성군	_	
10	고성읍 무량리	351-1	도	43	32	_	고성군	-	
11	고성읍 무량리	352-1	전	890	1	_	심재신	창원시 상남동 44-1 대동아파트 115-302	
12	고성읍 무량리	352-3	전	16	13	_	고성군	_	
13	고성읍 무량리	353-4	답	66	61	_	고성군	_	

일련	소기	해지	-117	면 조	(m²)	014		소유자	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	고성읍	353-5	답	6	1	-	고성군	-	
14	무량리								
15	고성읍	375-2	도	139	4	-	최판진	고성읍 무량리 189	
15	무량리								
16	고성읍	433-42	전	119	1	-	국(재무부)	-	
10	무량리								
17	고성읍	433-88	천	142	142	_	국(건설부)	-	
17	무량리								
18	고성읍	447-4	도	68	55	_	국(건설부)	-	
10	무량리								
19	대가면	689	답	3,055	343	-	김원태	고성읍 수남3길 28	
	연지리								
20	대가면	790-1	답	1,677	15	-	어경효	고성읍 동외로178번길 20	
	연지리								
21	대가면	산97	임	16,264	192	-	박수연	통영시 동문5길 14 (정량동)	
	연지리								
22	대가면	산96	임	8,276	22	보전관리지역	이승화	마암면 도전2길 16-24	
22	연지리	산96	임	8,276	17	보전관리지역	이춘길	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서1길 32	
23	대가면	산96-2	임	993	122	보전/생산 관리지역	고성군	_	
20	연지리	산96-2	임	993	136	보전/생산 관리지역	고성군	-	
24	대가면	산96-1	임	252	128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24	연지리	산96-1	임	252	118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25	대가면	796	유	119	9	생산관리지역	고성군	-	
20	연지리	796	유	119	9	생산관리지역	고성군	-	
26	대가면	794	유	625	38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20	연지리	794	유	625	38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
일련	소기	·	ם (כ	면 전	(m²)	o 도기에		소 유 자	บไว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0.7	대가면	790-5	답	92	56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27	연지리	790-5	답	92	56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_	
28	대가면								
20	연지리	791-1	전	1,302	15	보전관리지역	어경효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178번길 20	
29	대가면	1012-1	천	90,401	18,450	보전관리지역	국(건설부)	_	
29	연지리	1012-1	천	55,867	13,479.3	보전관리지역	환경부	-	
20	대가면	789	답	347	131	보전관리지역	김상덕	경남 대가면 연지리 952	
30	연지리	789	답	347	130	보전관리지역	김상덕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952	
0.1	대가면	815	답	3,134	133	농림지역	천윤호	동해면 장좌1길 37	
31	연지리	815	답	3,134	134	농림지역	천윤호	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장좌1길 37	
32	대가면	790-2	답	1,779	39	보전관리지역	김종구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782	
32	연지리	790-2	답	1,779	39	보전관리지역	김종구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782	
33	대가면								
33	연지리	670	너	5,385	2	농림지역	농림축산식품부	_	
34	대가면	650-1	답	1,935	21	농림지역	하유덕	대가면 연지리 952	
34	연지리	650-1	답	1,935	22	농림지역	김은주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76번길 28-3, 102호	
35	대가면	680	구	80	80	농림지역	국(농림수산부)	_	
30	연지리	680	구	80	82	농림지역	농림축산식품부	_	
200	대가면	650-2	답	2,948	4	농림지역	배삼진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95	
36	연지리	650-2	답	2,948	4	농림지역	배삼진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95	
0.7	대가면	788	답	347	6	보전관리지역	이금순	대가면 연지리 578	
37	연지리	788	답	347	6	보전관리지역	이금순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78	
200	대가면								
38	연지리	산97-3	임	1,650	225	보전관리지역	주식회사 해교휘영청	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로 477, 101호	
00	대가면	650-4	답	3,257	6	농림지역	이금순	대가면 연지리 578	
39	연지리	650-4	답	3,257	3	농림지역	이금순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78	

일련	소기	<b>대</b> 지	지목	면적	(m²)	o 드리션		소유자	비고
번호	읍면	지번	시속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미끄
40	대가면	650-5	답	1,508	84	농림지역	제범환	고성읍 성내로 56 501동 103호(덕진5차휴먼빌)	
40	연지리	650-5	답	1,508	54	농림지역	제범환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56, 501동 103호	
41	대가면	650-6	답	1,504	24	농림지역	박영호	부산광역시 서구 아미초장로 23(초장동)	
41	연지리	650-6	답	1,504	17	농림지역	박영호	부산광역시 서구 아미초장로 23 (초장동)	
42	대가면	650-7	답	1,043	24	농림지역	제범환	개천면 명성리 626-1	
42	연지리	650-7	답	1,043	16	농림지역	제범환	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명성리 626-1	
43	대가면	650-8	답	2,627	75	농림지역	정연주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78	
40	연지리	650-8	답	2,627	62	농림지역	정연주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78	
44	대가면	산98	임	7,339	151	보전관리지역	박수연	통영시 동문5길 14 (정량동)	
44	연지리	산98	임	7,339	164	보전관리지역	주식회사 해교휘영청	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외산로 477, 101호	
45	대가면	산100	임	27,273	103	보전관리지역	심재호	고성읍 무량리 364	
45	연지리	산100	임	27,273	78	보전관리지역	심원	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345, 201호 (구산동)	
46	대가면	824	전	426	66	보전관리지역	박은환	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작로 104-1 307호	
40	연지리	824	전	426	66	보전관리지역	박은미	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7로 110, 113동 1604호	
47	대가면	650-10	답	2,773	91	농림지역	천점석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599	
47	연지리	650-10	답	2,773	76	농림지역	천수홍	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15길 26, 102동 705호	
48	대가면	650-11	답	3,000	64	농림지역	천수홍	함안군 가야읍 가야15길 26 102동 705호	
40	연지리	650-11	답	3,000	57	농림지역	천수홍	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15길 26, 102동 705호	
49	대가면	681	구	2,003	454	농림지역	국(농림수산부)	-	
43	연지리	681	도	2,003	533	농림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50	대가면	682	도	5,250	2,081	농림지역	국(농림수산부)	-	
30	연지리	682	도	5,250	2,519	농림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51	대가면								
31	연지리	651-22	답	290	290	농림지역	고성군	-	
52	대가면	651-2	답	707	9	농림지역	조석래	대가면 연지1길 49	
32	연지리	651-24	냡	274	274	농림지역	고성군		

일련	소기	대지 대지	-) H	면적	(m²)	0 = 303		소유자	n) —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	대가면								
53	연지리	651-25	답	149	149	농림지역	고성군	-	
<b>5</b> 4	대가면	651-4	답	1,094	37	농림지역	조상래	대가면 연지1길 49	
54	연지리	651-26	답	234	234	농림지역	고성군	-	
	대가면	651-5	답	1,248	52	농림지역	조상래	대가면 연지1길 49	
55	연지리	651-27	답	268	268	농림지역	조명래	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용방소10길 20, 8동 208호	
F.C.	대가면	660	답	187	170	농림지역	덕산규조	고성읍 덕선리 277	
56	연지리	660	답	187	187	농림지역	덕산규조 외 3인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277	
	대가면	651-6	답	429	3	농림지역	심재열	고성읍 무량로 191-14	
57	연지리	651-28	답	70	70	농림지역	고성군	-	
58	대가면 연지리	651-29	답	152	152	농림지역	고성군	-	
	대가면	688	답	70	50	농림지역	한만열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무너미길 6 디동 401호	
59	연지리	688	답	70	70	농림지역	김은희	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8-41, 301동 303호	
20	대가면	651-8	답	2,159	16	농림지역	이성순	고성읍 무량리 383	
60	연지리	651-30	답	267	267	농림지역	고성군	-	
0.1	대가면	651-9	답	2,100	51	농림지역	한금자	거제시 옥포대첩로1길 7 1202호 (옥포동 옥포마리나아파트)	
61	연지리	651-31	답	302	302	농림지역	고성군	-	
60	대가면								
62	연지리	689-4	답	482	482	생산관리지역	고성군	_	
63	대가면								
<b>63</b>	연지리	689-5	답	181	181	생산관리지역	유은진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2길 76-15	
	대가면								
64	연지리	689-3	답	912	13	생산관리지역	유은진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2길 76-15	
65	대가면								
50	연지리	690-4	답	22	22	생산관리지역	유은진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2길 76-15	

일련	소기	내지	-) II	면 조	(m²)	O 도 귀여		소 유 자	บไว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66	대가면 연지리	690-1	답	14	1	생산관리지역	유은진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신월2길 76-15	
67	대가면 연지리	690-3	답	284	284	생산관리지역	고성군	_	
68	대가면 연지리	690 690	답답	2,423 2,027	245 1	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	김옥연 김옥연	고성읍 무량리 374-1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374-1	
69	대가면 연지리	691-1	답	112	112	생산관리지역	심재명	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, 502동 804호	
70	대가면 연지리	693 693-1	답답	496 280	139 280	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	배영환 심재명	고성읍 무량리 342 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, 502동 804호	
71	대가면 연지리	694 694-1	답	347 166	114 166	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	허원도 고성군	고성읍 교사대독길 15 101호(대동맨션)	
72	대가면 연지리	692	H 	2,806	42	생산관리지역		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, 502동 804호	
73	대가면 연지리	1034 1034	도	608 608	15 51	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	국(건설부) 국토교통부	에인전모100전달 7, 502·5 004오 - -	
74	대가면 연지리	695 695	대 대	479 479	59 479	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	이배진 고성군	고성읍 교사대독길 15 110호(대동맨션) -	
75	대가면 연지리	651-10 651-32	답	2,105 161	3	농림지역 농림지역	한성철 한정식	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실로 73-6 203동 302호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1길	
76	대가면 연지리	664 664	답답	13 13	5 13	농림지역 농림지역	심의섭	28-8 고성읍 무량리 383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79번길 14-4, 3층	
77	대가면 연지리	665-2	답	84	84	농림지역	고성군	1010 TE 14 4, US	
78	대가면 연지리	651-12	답	1,217	1	농림지역	정점둘	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21-3 201동 1103호	

일련	소자	N기	-) II	면 적	(m²)	0 = 7161		소유자	w) -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	대가면								
79	연지리	666-7	답	12	12	농림지역	고성군	-	
90	대가면								
80	연지리	666-8	구	6	6	농림지역	이성락	경상남도 산청군 단성면 삼곡리	
81	대가면								
01	연지리	687-2	답	171	171	농림지역	정점둘	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36번길 22-12, 102동 605호	
82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651-34	답	68	68	농림지역	정점둘	경상남도 김해시 내동 121-3 201동 1103호	
83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651-35	답	156	156	농림지역	고성군	-	
84	대가면 연지리	651-36	답	66	66	농림지역	하승호	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	
	~i) ~i m		П			0 11 11	70	구영리 211-1 102동 1301호	
85	대가면 연지리	651-37	답	45	45	농림지역	하승호	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대리3길 23, 101동 1001호	
86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651-38	답	128	128	농림지역	하승호	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60-2	
87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651-39	답	98	98	농림지역	고성군	-	
88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651-40	답	169	169	농림지역	고성군	-	
89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651-41	답	36	36	농림지역	고성군	_	
90	대가면							거시나는 아시가 미그 이 모음으로	
	연지리	651-42	답	110	110	농림지역	박은희 	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목화2길 8-6	
91	대가면	651-21	답	502	21	농림지역	정진필	대가면 연지1길 52	
	연지리	651-43	답	105	105	농림지역	박은희	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목화2길 8-6	

일련	소기	해지	-) <del>u</del>	면정	(m²)	0 E 3 M		소유자	비고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P).
	대가면								
92	연지리	649-19	답	6	6	농림지역	고성군	_	
	대가면								
93	연지리	656-16	답	43	43	농림지역	고성군	-	
	대가면								
94	연지리	656-17	답	114	114	농림지역	고성군	-	
	대가면	산108	임	17,851	45	보전관리지역	이지완	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12동 1402호	
95	연지리	산108	임	17,851	45	보전관리지역	이지완	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212동 1402호	
	대가면	산109	임	19,041	131	보전관리지역	심재영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58	
96	연지리	산109	임	19,041	131	보전관리지역	심재영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58	
97	대가면 연지리	683	답	863	4	보전관리지역	심상보	대가면 연지리 158	
		683	답	863	863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	대가면 연지리	684	답	1,104	17	보전관리지역	심연수	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58	
98		684	답	1,104	1,104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00	대가면	224	답	311	71	보전관리지역	심재호	고성읍 무량리 364	
99	연지리	224	답	311	311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100	대가면	223	답	1,266	84	보전관리지역	심재호	고성읍 무량리 364	
100	연지리	223	답	1,266	1,266	보전관리지역	고성군	-	
101	대가면								
101	연지리	656-18	답	17	17	농림지역	고성군	-	
102	대가면								
102	연지리	656-19	답	240	240	농림지역	심정보	경상남도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545-31	
103	대가면								
100	연지리	685	구	293	53	농림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104	대가면								
104	연지리	657-5	답	339	339	농림지역	심재복	경상남고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345-1	

일련	소기	대지	-) U	면적	덕(m²)			소유자	יון יי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105	대가면	657-3	답	1,787	33	농림지역	심재복	고성읍 무량리 345-1	
105	연지리	657-6	답	667	667	농림지역	심재복	경상남고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345-1	
106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657-7	답	388	388	농림지역	고성군	-	
107	대가면	1012-18	천	275	275	농림지역	국(건설부)	-	
107	연지리	1012-18	천	499	499	농림지역	환경부	-	
108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290-7	구	3,164.3	200	농림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109	대가면								
103	연지리	215-14	답	170.7	170.7	농림지역	심재철	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진의로 1079번길 14-4, 3층	
110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215-13	답	92.3	92.3	농림지역	이수정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 200-1	
111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215-12	답	126.8	126.8	농림지역	심재주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13 107동 404호	
112	대가면								
112	연지리	215-11	답	10.6	10.6	농림지역	심재주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773번길 13 107동 404호	
113	대가면								
110	연지리	215-10	답	448.1	448.1	농림지역	고성군	-	
114	대가면								
114	연지리	215-9	답	230.5	230.5	농림지역	고성군	-	
115	대가면								
110	연지리	1026	도	2,215.7	215	계획관리지역	국토교통부	-	
116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206-4	대	17.7	17.7	계획관리지역	심상규	-	
117	대가면								
111	연지리	1012-20	천	3,842.1	3,842.1	계획관리지역	국토교통부	-	

일련	소기	재지	-) II	면 적(m')		0 = -104	소 유 자		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	대가면								
118	연지리	133-1	과	29.8	29.8	계획관리지역	이종상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19-12	
110	대가면								
119	연지리	134-1	전	276.7	276.7	계획관리지역	심재화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58	
120	대가면								
120	연지리	133-2	과	9.8	9.8	계획관리지역	이종상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19-12	
121	대가면	136	구	423	301	계획관리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121	연지리	136	구	602.8	602.8	계획관리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122	대가면								
122	연지리	131-5	답	55.4	55.4	계획관리지역	문정이	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801-2 105동 205호	
123	대가면								
120	연지리	131-6	답	55.1	55.1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24	대가면 연지리								
		131-7	답	25.6	25.6	농림/계획 관리지역	고성군	-	
125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1018-4	구	80.6	1	농림지역	환경부	-	
126	대가면								
	연지리	1012-21	천	26,048	924	계획관리지역	국토교통부	-	
127	고성읍	446-1	천	3,795	3,725	농림/계획 관리지역	국(건설부)	-	
121	무량리	446-1	천	4,092.3	4,092.3	농림/계획 관리지역	환경부	-	
128	고성읍								
	무량리	378-2	답	31.1	31.1	농림지역	고성군	-	
129	고성읍	378	답	688	9	계획관리지역	최판진	고성읍 무량로 151-14	
	무량리	378	답	678.5	7	계획관리지역	최판진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로 151-14	
130	고성읍					1 =1 ( 2 =2			
200	무량리	455	도	524.9	173	농림/계획 관리지역	국토교통부	-	

일련	소재지		-) II	면 적(m²)		0 = 707	소유자		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101	고성읍								
131	무량리	378-3	대	6.7	6.7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	고성읍								
132	무량리	378-1	대	422.5	33	농림지역	김상준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3길72	
100	고성읍	375-1	답	506	102	농림지역	최판진	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89	
133	무량리	375-3	답	172.1	172.1	농림지역	고성군	_	
104	고성읍	359-4	임	56	56	계획관리지역	정용준	대가면 연지리 170	
134	무량리	359-4	임	56	56	계획관리지역	정용준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70	
	고성읍								
135	무량리	374-7	대	10.4	10.4	계획관리지역	김문도	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천로118번길 38, 301호 (연산동, 수강드림빌라드)	
100	고성읍	272-5	구	6,968	596	농림/계획 관리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136	무량리	272-5	구	6,704.6	500	농림/계획 관리지역	농림축산식품부	_	
107	고성읍								
137	무량리	360-3	도	433	40	계획관리지역	농림축산식품부	_	
100	고성읍								
138	무량리	360-5	답	11.4	11.4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_	
	고성읍								
139	무량리	360-6	답	1.1	1.1	계획관리지역	하태호	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17번길 96 303호 (대연동, 부성베스트)	
	고성읍	360-1	답	278	7	계획관리지역	김귀숙	고성읍 무량3길 55	
140	무량리	360-1	답	290.2	22	계획관리지역	정명희	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65번길 11, 109동 1402호 (중산동, 스카이시티자이)	
141	고성읍 무량리	306-4	답	167	167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_	
			H	107	107	/ II ¬ U U / I T			
142	고성읍 무량리	357-3	답	12	12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_	
	그서ㅇ								
143	고성읍 무량리	357-2	도	546.2	239	농림/계획 관리지역	농림축산식품부	_	

일련	소기	<b>대</b> 지	-117	면 조	(m²)	0=-144	소유자		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	고성읍								
144	무량리	354-3	잡	19.1	19.1	계획관리지역	주식회사케이티	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(정자동)	
1.45	고성읍								
145	무량리	354-2	답	24.1	24.1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46	고성읍								
140	무량리	354	답	862.1	24	계획관리지역	정윤근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343	
147	고성읍								
147	무량리	353-3	답	26.7	3	계획관리지역	심원보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78	
148	고성읍								
140	무량리	350-4	답	629.2	60	계획관리지역	심재웅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3길 14	
149	고성읍								
	무량리	353-7	답	295.6	295.6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50	고성읍	353	답	575	11	계획관리지역	심재웅	고성읍 무량3길 14	
100	무량리	353-6	답	276.4	276.4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51	고성읍								
	무량리	352-5	전	552.6	552.6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52	고성읍								
102	무량리	350-5	답	22.4	22.4	계획관리지역	이병영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353	
153	고성읍	351	임	59	18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00	무량리	351	임	11	11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54	고성읍	352-4	답	56	42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201	무량리	352-4	답	13	13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55	고성읍								
	무량리	326-11	전	22	22	계획관리지역	고성군	-	
156	고성읍							커지나는 그리고 하나면 작가다	
	무량리	349-1	전	7.4	7.4	계획관리지역	심영보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연지리 173	

일련	소기	내지	-) II	면적	(m²)	o 도 귀여	소 유 자		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157	고성읍								
197	무량리	326-14	전	34.3	34.3	계획관리지역	허둘순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140-2	
158	고성읍								
130	무량리	333-5	도	102	58	계획관리지역	이창수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602	
159	고성읍								
139	무량리	333-2	도	179	67	농림지역	이창수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덕선리 602	
160	고성읍	325	도	46	29	농림지역	고성군	-	
160	무량리	325	도	75.8	69	농림지역	고성군	_	
101	고성읍	446-4	도	883	675	농림지역	국(건설부)	-	
161	무량리	446-4	도	883	613	농림지역	국토교통부	_	
100	고성읍 무량리	322	도	119	109	농림지역	고성군	-	
162		322	도	119	113	농림지역	고성군	-	
163	고성읍 무량리								
103		323-1	전	1,033.4	2	농림지역	심재열	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무량리 248-1	
164	고성읍	321	천	400	400	농림지역	김학주	_	
104	무량리	321	천	400	400	농림지역	김학주	_	
165	고성읍	321-1	도	169	169	농림지역	김학주	-	
100	무량리	321-1	도	169	169	농림지역	김학주	_	
166	고성읍	433-43	도	106	90	농림지역	국(건설부)	-	
166	무량리	433-43	도	106	106	농림지역	국토교통부	_	
107	고성읍	320	도	360	315	농림지역	고성군	-	
167	무량리	320	도	499	334	농림지역	고성군	_	
100	고성읍	433-85	도	99	98	농림지역	국(재무부)	-	
168	무량리	433-85	도	99	97	농림지역	기획재정부	-	
160	고성읍								
169	무량리	323-7	전	552.8	4	농림지역	심재명	경상남도 김해시 해반천로168번길 7 502동 804호	

일련	소재지		면 전		덕(m²)			소유자	비고
번호	읍면	지번	지목	대장면적	편입면적	용도지역	성명	주소	비고
1=0	고성읍								
170	무량리	433-86	전	11	10	농림지역	기획재정부	-	
	고성읍								
171	무량리	433-104	도	141	129	농림지역	국토교통부	-	
172	고성읍								
172	무량리	303-1	구	853.7	65	농림지역	농림축산식품부	-	
173	고성읍								
175	무량리	433-59	천	348	1	농림지역	환경부	-	
174	고성읍	433-55	천	40	22	농림지역	국(건설부)	-	
174	무량리	433-55	천	82.7	82.7	농림지역	환경부	-	
175	고성읍 무량리	443	도	23	23	농림지역	국(건설부)	-	
175		443	도	23	23	농림지역	국토교통부	_	
176	고성읍 무량리	305-2	임	413	413	농림지역	박승하	-	
170		305-2	임	413	413	농림지역	박승하	-	
177	고성읍	305-1	답	420	406	농림지역	박용위	성내리 139-3	
177	무량리	305-1	답	420	406	농림지역	박수원	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무량로 335	
1/70	고성읍	433-87	도	470	453	농림지역	국(건설부)	-	
178	무량리	433-87	도	329	329	농림지역	국토교통부	_	
170	고성읍	305-3	도	281	119	농림지역	고성군	-	
179	무량리	305-3	도	281	119	농림지역	고성군	_	
100	고성읍	433-40	도	66	15	농림지역	국(재정경제부)	-	
180	무량리	433-40	도	66	15	농림지역	기획재정부	_	
181	고성읍	433-41	도	145	49	농림지역	국(재무부)	-	
101	무량리	433-41	도	145	49	농림지역	기획재정부	_	
182	고성읍	306-5	도	523	511	농림지역	고성군	-	
182	무량리	306-5	도	523	511	농림지역	고성군	_	

일련	소자	M지	지목	면 적(m')		용도지역	소유자		
번호	읍면	지번	시도	대장면적	편입면적	27714	성명	주소	비고
100	고성읍	285	답	1,719	35	농림지역	연안김씨 통영종중	통영시 도산면 원산리682-1	
183	무량리	285	답	1,719.3	35	농림지역	연안김씨 통영 <del>종중</del>	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 682-1	
104	고성읍 무량리	306-4	도	167	4	농림지역	고성군	_	
184		306-4	도	167	4	농림지역	고성군	_	

